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2차)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2차)

2024. 1. 18.(목)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업 내용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매칭 비용 지원 :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없음)

- 정부지원 예산규모 : 90억원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 2024. 12. 13.(금)
- 사업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참여방법 :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조건 : 매칭지원 참여
- 사업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②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③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4. 1. 18.(목) 09:00 ~ 1. 31.(수) 18:00
신청방법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첨부1)하여 신청
신청자격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사업대상 선정방법	• 모기업 규모, 협력업체 매칭지원 활동과제(수), 취약 협력업체(수), 50인 미만 협력업체(수), 위험업종,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문의처 : 052-703-0631, 0633(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044-202-8924, 8826(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4. 12. 13.(금)
- (사업규모) 정부 지원 예산액 90억원
 - ※ 참여 사업장들의 매칭지원 총 신청금액이 정부예산(9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서울 광역시본부	부산 광역시본부	광주 광역시본부	대구 광역시본부	인천 광역시본부	대전세종 광역시본부	경기 지역본부
매칭지원	9,000	1,200	1,650	1,350	1,200	900	1,650	1,050

※ 위 배정액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광역시본부별 관할구역은 <첨부8> 참조)

□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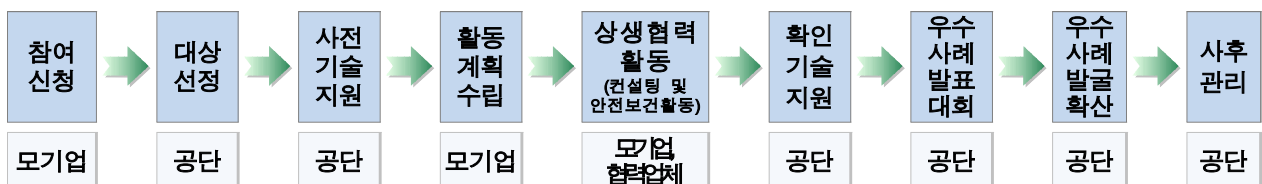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역 중소기업이란 '24년 본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본 사업 종료일 까지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말함

《 사업대상 선정 기준(첨부2) 》

① 위험업종 모기업 및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② 사외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다수 참여 ③ 50인 미만 소규모업체 다수 참여 ④ 상생협력활동 과제 규모 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 ⑥ '24년 본 사업 신규참여 모기업 ⑦ '22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23년 본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우수기업

□ 추진절차



- ◆ 모기업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에 전수
- ◆ 공단이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 활동내용(예시) 》

① 위험성평가 실시 사례, ②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③ 아차사고 발굴 및 제안제도 활용, ④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활동, ⑤ 산재예방 우수 사례 공유, ⑥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⑦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 협의체에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를 추가하여 운영 가능

□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공단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원청)과 협력업체간 자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단이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1단계) 사전기술지원(활동계획 수립 지원) → (2단계) 확인기술지원(이행 모니터링)

- (사전기술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
- (확인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계획의 현장 이행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과제(첨부4)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중 세부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①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컨설팅 과제(첨부4)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50	모기업30 : 정부70

- (지원한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총 3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모기업이 컨설팅(첨부4) 지원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는 경우,

○ (예시1) 사내 협력업체 5개소, 사외 협력업체 5개소, 지역 중소기업 5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1,000만원씩 소요된 경우

- 컨설팅 소요 총 비용은 1억5천만원

: 정부지원액 9천5백만원, 모기업 분담액 5천5백만원

* 정부지원액 9천5백만원 = 사내 5개소 정부지원액 총 2천5백만원(= 1개소당 1,000만원 x 50% x 5개소) + 사외·지역 총 10개소 정부지원액 총 7천만원(= 1개소당 1,000만원 x 70% x 10개소)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예시2) 사내 협력업체 5개소, 사외 협력업체 5개소, 지역 중소기업 5개소에 대해 컨설팅(첨부4)을 지원하고,
 - 이들 중 총 5개소(사내 2개소, 사외 2개소, 지역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3,000만원씩 소요되고,
 - 나머지 10개소(사내 3개소, 사외 3개소, 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1,500만원씩 소요된 경우
 - 컨설팅 소요 총 비용은 3억원
: 정부지원액 1억8천6백만원, 모기업 분담액 1억1천4백만원
 - * 정부지원액 1억8천6백만원 = ①9천만원 + ②9천6백만원
 - ①컨설팅 소요비용이 1개소당 3,000만원인 경우: 총 5개소(사내 2개소, 사외 2개소, 지역 1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액: 총 9천만원 = (1개소당 3,000만원 x 50% x 사내 2개소) + (1개소당 정부지원액 최대 2,000만원(3,000만원 x 70%에서 최대 한도액) x 사외·지역 3개소)
 - ②컨설팅 소요비용이 1개소당 1,500만원인 경우: 총 10개소(사내 3개소, 사외 3개소, 지역 4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액: 총 9천6백만원 = (1개소당 1,500만원 x 50% x 사내 3개소) + (1개소당 1,500만원 x 70% x 사외·지역 7개소)

-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컨설팅 내용을 선정

< 컨설팅 주요 내용(첨부 4 참조) >

구분	주요 내용(예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향상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3대 사고 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폭발 위험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등 예방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시 필수 병행 실시)	CEO 인식개선,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 간 소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50	모기업30 : 정부70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다만, 안전보건물품 매칭 지원의 경우, 컨설팅, 캠페인, 세미나 등 타 활동과제와 병행하지 않고 오직 안전보건물품만 매칭 지원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당 최대 5천만원**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 총 3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 (예시1) 모기업이 안전보건활동과제 지원분야(첨부7) 중 안전보건 세미나를 개최
 - 사내 협력업체 15개소, 사외 협력업체 10개소, 지역 중소기업 5개소가 참여하여 총 비용이 3,000만원인 경우
 - : 정부지원액 1,800만원, 모기업 분담액 1,200만원
 - * 정부지원액 1,800만원 = 3,000만원 x (사내 15개소 / 세미나 참여 30개소 x 50% + 사외·지역 15개소 / 세미나 참여 30개소 x 70%)
 - (예시2) 모기업이 안전보건활동과제 지원분야(첨부7) 중 안전보건물품(컨설팅, 캠페인, 세미나 등 타 활동과제와 병행 지원하는 경우)을 사내 5개소(총 4,000만원), 사외 6개소(총 4,800만원), 지역 중소기업 4개소(총 3,200만원)에 지원
 - 총 비용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 : 정부지원액 7,600만원, 모기업 분담액 4,400만원
 - * 정부지원액 7,600만원 = 사내 5개소 총 4,000만원 x 50% + 사외·지역 10개소 총 8,000만원 x 70%

- (과제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의 지원과제 중에서 선정

《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참조) 》

- ① 안전보건 캠페인,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② 안전보건 물품(보호구, 측정장비 등) 지원, 협력업체 안전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 ③ 안전보건진단 수수료 지원,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이상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만 해당)
-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단에서 안전보건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 **매칭지원 참여방식 및 매칭지원 제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 모기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컨설팅 과제 또는 안전보건활동 과제는 아래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참여

《 매칭지원 참여방식 》

- ① 컨설팅 과제 지원만 참여(협력업체 1개소당 2천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지원만 참여(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 ③ 컨설팅 과제+안전보건활동 과제 모두 참여(위 ①, ② 각각 충족,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

《 매칭지원대상 제외 》

- 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 ③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④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 ⑤ **(컨설팅과제)**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년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모기업-지역 중소기업 컨소시엄(연결짓기) 구성 지원**

- (공단)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목록 제공(별첨 참고)
- (모기업) 동 목록을 참조하여 모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연결짓기를 실시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

- ※ 모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소재지역과 무관하게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공단 제공 목록에 없는 지역 중소기업과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상생협력활동 모니터링**

- 공단에서 참여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매칭 지원의 이행 상황 점검, 위험성평가 실행 능력 제고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 참여 신청

참여방식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참여신청 : 모기업이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에 참여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4. 1. 18.(목) 09:00 ~ 2024. 1. 31.(수) 18:00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모기업(사업장 단위)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공단 광역본부 관할구역은 <첨부8> 참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광역본부	02-6711-2965	(우 04512)
	gudrms89@kosha.or.kr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부산광역본부	051-520-0531	(우 46274)
	kb2253@kosha.or.kr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
광주광역본부	062-949-8745	(우 62364)
	dhkim8889@kosha.or.kr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9층
대구광역본부	053-609-0524	(우 41939)
	jsh@kosha.or.kr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인천광역본부	032-5100-608	(우 21417)
	kys@kosha.or.kr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15	(우 34122)
	winwin@kosha.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2층
경기지역본부	031-259-7172	(우 16229)
	paran44@kosha.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7층

- **(문의처)** 상기 접수처 및 공단 본부(전화: 052-7030-631, 633 E-mail: jmch94@kosha.or.kr)

매칭지원 신청

신청방법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모기업이 신청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매칭지원 과제에 대한 매칭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
 - ※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에 추가하여 컨설팅 과제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이후(수시)

□ 선정방법

- (1차)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서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2차) 공단 본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참여 모기업(컨소시엄)을 최종 확정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 *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으로 재해감소에 기여
- (선정통보)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 사업 신청 모기업)

□ 선정기준

-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공단 본부에 제출, 공단 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참여 모기업(컨소시엄)을 최종 확정

선정기준	세부기준	배점
① 100인 이상 모기업 위험업종	○ 고용부 위험분류 기준에 따른 위험업종 모기업 참여 여부	최대 10점
② 중대재해 취약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참여	○ 취약 협력업체 참여 수(협력업체 당) - 사내협력업체, 사외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50인 미만 협력업체, 협력업체 중 위험업종	·사내 최대 40점 ·사외 지역중기는 제한없이 합산
③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당 10점 ○ 매칭지원 안전보건활동 과제 당 2점	최대 40점
④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	○ 지역의 산업구조/고용현황/재해특성/지역적 이슈 등에 따라 자율선정 * 7개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서 별도 선정기준 수립	10점
⑤ 가점	○ '24년 본 사업 신규 참여 모기업	15점
	○ '22년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23년 본 사업 우수사례 발표 대회 참여 모기업	5점
	○ '22년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등급(A등급) 및 '23년 본 사업 우수기업	5점

□ 컨설팅 수행 절차

- **(컨설팅 협약)** 3자간 협약[공단(광역본부 등)-모기업-컨설팅 기관] 체결
 - 협약에 필요한 서류 : <첨부 9> 참조
 - ※ 공단 분담금의 경우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실태 컨설팅)** 모기업이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컨설팅기관은 수행일지, 단계별 산출물* 및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모기업의 확인을 받아 보관
 - * 과제별 컨설팅 보고서, 교안, 회의록 등(보고서 서식 등은 별도 제공 예정)
- **(이행 모니터링)** 공단(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은 실태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이행 모니터링** 실시
 - * 공단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매칭지원관리를 위탁하는 기관
 - ** 컨설팅 기관의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컨설팅기관 단위, 1~2개소)
 - 모니터링 결과는 수행완료 확인결과에 반영
 - ▶ 참여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사업 만족도 조사 포함 실시
- **(지원계획 변경)** 컨설팅기관은 승인된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광역본부 등)에 변경 요청
 - * 협약기간 연장, 컨설팅 지원분야, 컨설팅 투입계획 변경 등
 - 공단(광역본부 등)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 시 소요비용(협약금액) 등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모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통보
- **(확인 컨설팅)**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적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
 - ※ 실태 컨설팅 및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정보 제공 포함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광역본부 등)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 확인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협약기간 내 제출)
 - 제출서류 : 수행완료 보고서 및 수행일지(산출물 전체 포함)

□ 컨설팅 실시 기준

- **(컨설팅 기준)** 실태 컨설팅(2명×3~5일), 확인 컨설팅(2명×2~3일)
 - ※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실태 컨설팅(2명×2~4일), 확인컨설팅(2명×1~2일)
 - ※ 컨설턴트 2인 1조 예외: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이 컨설팅 가능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 당 5시간 이상
- **(컨설턴트 기준)**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첨부 6 참조)』의 기준 적용
- 컨설턴트 2인 중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이 반드시 참여
- **(교육 기준)** “실태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를 교육 강사로 필수 지정
- 협력업체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2~3회 교육 실시
 - ※ 컨설팅 실시 세부기준은 <첨부 5> 참조

□ 주요 과업내용

- **(컨설팅 내용)**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별 세부내용(첨부4)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 * 세부 내용에 대한 매뉴얼은 지원대상 선정 이후 별도 제공 예정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제시
 - *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별 경영층(CEO 등) 면담(강평 포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 보고서 총평부분에 기입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예방에 기여
- **(교육연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선택한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와 내용적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경영층(CEO 등),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재정지원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
 - * 고위험요인 시설개선(클린),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ilter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용자금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함을 안내(안내 리플렛 등 제공)
- **(자료보급 등 지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보급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 연도 참여 배제

- ① 공단 '민간위탁사업평가'의 '23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4년 사업참여 제한 기관
 -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그 밖에 컨설팅 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 * 컨설턴트의 기술자격 등급이 특급기술자 이상(특급기술자, 기술사, 지도사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컨설턴트 참여 제한>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담당 기관장/부서장/담당자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퇴직 전 관할지역 내 모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한

□ 사업비 신청 및 정산(지원금 지급)

- (선금 신청)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공단(광역본부 등) 심사위원회의 수행완료 적정성 검토 심의를 거쳐 확인결과를 최종 확정, 확인결과에 따라 공단과 모기업의 지원금(잔금) 지급
 - ※ 컨설팅 중 휴·폐업, 소멸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은 컨설팅 실적기준 정산
 - ※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제한 조건

- 공단(광역본부 등)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정산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름
 - 모기업 및 컨설팅 기관이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 내용 확인 후 즉시 해지)
 - ※ 상기 사유로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공단(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컨설팅 기관에 1차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 경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심의위원회(광역본부 등)를 개최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이행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 등
- 명백하게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생시킨 “컨설팅기관”은 향후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한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첨부3 참조)

VI

기타

□ 선정결과 발표 : 2024. 2. 7.(수)

- 선정심사 후 접수·선정심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발표 및 선정 모기업에 개별 통보
 - ※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선정결과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및 매칭지원 신청서 등 사업수행 양식은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모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상생협력활동 수준 확인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은 사업 대상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참여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 <첨부>**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1부.
 3. 사업 인센티브 1부.
 4.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1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1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1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부.
 8.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1부.
 9.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1부.

<별첨> 사업 참여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목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협력업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모기업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모기업 대표 성명 :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참여 사업장 현황(총괄)

■ 일반현황

모기업 현황	사업장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산재보험 중업종명		
참여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현황	총 계 : _____개사			
	사내 협력업체 : ____개사	2차 이하 협력업체 : _____개사		
	사외 협력업체 : ____개사	지역 중소기업 : _____개사		
매칭 비용 지원 계획	컨설팅과제	지원계획 업체수	총 _____개사 ■ 사내 협력업체 _____개사, ■ 사외 협력업체 _____개사, ■ 지역 중소기업 _____개사	
		지원 계획액	총 _____백만원	
	안전보건 활동과제	지원계획 과제수	총 _____개 과제	
		지원계획 업체수	총 _____개사 ■ 사내 협력업체 _____개사, ■ 사외 협력업체 _____개사, ■ 지역 중소기업 _____개사	
		지원 계획액	총 _____백만원	

<첨부 2-1> 100인 이상 모기업 위험업종 배점기준

모기업 · 협력업체 위험업종 배점기준(표준산업분류)

사업의 종류	배점	
	모기업	협력업체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10. 조선업	10점	0.5점
11. 농업 12. 어업 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금융 및 보험업 17. 임대업; 부동산 제외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9.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사회복지 서비스업	6점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8점	0.2점

<첨부 3> 사업 인센티브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등급	등급별 혜택	관련근거	적용 시기/기간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체
우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사업추진계획	선정 다음연도 1년간	○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고용부 지침 (감독지침 등)	참여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1년간	○	○
	❖ 기업 우수 사례 홍보지원	사업추진계획	참여 다음연도 1년간	○	포함 가능
	❖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공정위)	참여 다음연도 1년간	○	
참여 기업	❖ 업무담당자 표창(우선 선정)	고용부·공단지침	-	○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우대	공단지침	참여 당해연도	×	○
	❖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우대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고용부·공단지침	참여 다음연도	○	○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보증료를 감면 : 기업별 보증료를 0.2%p 감면	- 공단-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2019.5.14.)	참여 당해연도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기준에 따름	- 공단-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업무협약 (2019.9.12.)		○	○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 (중소·중견 기업)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료 20% 할인	- 공단-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2021.11.19.)		○	○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고용부 지침 (감독지침 등)		○	○

<첨부 4>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 세부내용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 세부내용(예시)

<p>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신청예시: 파트1, 파트2, 파트1+파트2 별도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1)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2)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p>2.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3대사고 유형·8대요인)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대책 지원 - 추락·사다리·지붕·고소작업대·비계, 끼임·방호장치·LOTO,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p>3. 폭발장소 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폭발위험(인화성·분진 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누출원의 종류, 수, 위치)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p>4. 화학물질 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 	
<p>5.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공정별)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설문지)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통계)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교육) 및 조사방법 교육 등 	
<p>6.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유해가스 측정 등 -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 	
<p><공통 교육 내용(컨설팅 시 필수 병행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 간 소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 	

<첨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협의*하여 협력업체 업종과 수준을 고려,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

(1단계) 컨설팅 과제 선정
◇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2단계)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총 소요비용 산정)		
① 실태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① × 인원(2인1조) × 일수 ^② (3~5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5인 미만 협력업체인 경우 실태 컨설팅: 2인 × 2~4일 실시 가능
②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 CEO인식개선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강사 ^③ 투입	○ 등급 × 시간(최대 2시간/회) ※ (50인 미만) 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50%이상 참석) ※ (50인 이상)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30%이상 참석)
③ 확인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2~3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5인 미만 협력업체인 경우 확인 컨설팅: 2인 × 1~2일 실시 가능
※ 협력업체 당 총 컨설팅 소요비용은 컨설팅 과제별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확인하여 산정 - 컨설팅 소요비용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투입계획 수립 기준		
① 컨설팅 1회 당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		
② 컨설팅 1회(1일) 컨설턴트 투입시간 : 5시간 기준(1개소)		
③ 교육 강사는 반드시 "실태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중에서 지정		
※ 전체 컨설팅 수행기간은 1월 ~ 10월까지 약 10개월 한도 내 설정(~11.22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공단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		

<첨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 아래 구분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됨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전기, 화공, 인간공학, 안전분야, 보건분야 등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840,000	
	특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80,000
	고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80,000
	중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70,000
	초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20,000
교육	(가)군	· 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00,000	
	(나)군	· 그 외	240,000	

<첨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 아래에서 '지원기업'은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함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6개) 관련,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 지원기업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미거래 지역 중소기업

-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③ 출장 여비,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6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 3)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3. 안전보건 물품

※ 컨설팅과제 또는 캠페인·세미나 등 다른 안전보건활동과제의 매칭지원함이 없이 안전보건물품만 매칭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컨소시엄 당 5천만원

(지원품목)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안전인증 대상품) 등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送氣)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방한키트
- 2)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정기, ⑧클램프미터, ⑨만능회로측정기, ⑩열화상카메라,
⑪누전차단시험기, ⑫소음측정기, ⑬혈압계, ⑭조도계,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 ⑯지게차 안전장치,
- 3)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등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지원기업 및 근로자(모기업 제외)

(예산지원 범위)

- 지원품목 1) : ①소모품(방진마스크, 보호복)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60개 내외), ②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단, 쿨-키트 및 방한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 ③그 외 품목은 필요 작업조건(공정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개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원품목 2) : 지원기업 당 1대

- 단,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 –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근로자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 –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게차 안전장치
 - ▲(지원기준) 자가 소유, 지게차 등록증 및 차대번호 확인 설비(임대 지게차 제외)
 - ▲(지원대상) ①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케빈 등), ②운적석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 ▲(지원수량) 지원기업 보유 대수

○ 지원품목 3) : 지원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제작범위 :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

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지원기업 CEO,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 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모기업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 1) 주제 :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
- 2) 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7. 안전보건진단 ※진단의 종류 : 운영매뉴얼 참고

- 1)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
-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3) 중복지원제외 : ①안전분야 또는 체계구축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안전진단 참여 불가
②보건분야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보건진단 참여 불가
- 4)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5)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8. 근로자 휴게시설

1) 지원종류(TYPE) :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 휴게시설·비품(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별첨2 참고)**를 충족하여야 함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3)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1)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10.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지원결정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및 물품

2) 기타 :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상기 1~9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승인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단,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 **부가세는 기업의 매입·매출세액 환급에 따라 지원금에서 제외함**

<첨부 8>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서울서부지청
강원지역본부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원주지청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남부·서울관악지청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강원동부지사	강 릉 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태백·강릉지청, 영월출장소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역본부	창 원 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창원·진주·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양 산 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양산지청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광주지방노동청
전북지역본부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지청
제주지역본부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
전북서부지사	군 산 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익산·군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여 수 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여수지청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포 향 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포항지청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북부지사	의 정 부 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경기중부지사	부 천 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지청
고양파주지사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지청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역본부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청주지청
충남지역본부	천 안 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천안지청, 서산출장소
충북북부지사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충주지청
경기지역본부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평택지청
경기서부지사	안 산 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안양·안산지청
경기동부지사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지청

<첨부 9>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② 참여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참여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제출
③ 사업대상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접수 부여 후 공단 본부에 보고 ○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 (선정 통보)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④ 수행계획(안) 작성·제출 (모기업→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안) 수립 및 제출 -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자가진단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제출
매칭지원 신청 (모기업→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맞춤형 매칭지원*실시 - 소요비용을 일정비율로 분담 : 사내(50%^{정부}:50%^{모기업}), 사외·지역(70%^{정부}:30%^{모기업}) *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② 컨설팅 과제, ③ 안전보건활동 과제
⑤ 사전기술지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안)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1~4월)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모기업, 4월 말까지)
⑥ 확인기술지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이행수준 모니터링 실시(8~10월) - 사업 전반(추진절차, 확인내용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및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⑦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9~10월)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확인 대상 무작위 선정 및 위험성평가 실행 중심으로 확인
⑧ 추진실적 제출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11월)
⑨ 우수기업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발표대회, 상생협력활동 수준 확인 등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⑩ 사후관리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유효 기간 중 주기적 실태점검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수준 유지 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컨설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	
②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단계부터 컨설팅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부 지정) 기관 외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	
③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자율 선정 → 지원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선정 및 컨설턴트 투입규모, 소요비용 등 자율설계
▼	
④ 참여 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접수) - 참여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
▼	
⑤ 지원기업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승인 -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급 적격 여부, 수행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의-선정
▼	
⑥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 까지 착수금(선금) 지급 가능 - 공단 → 컨설팅기관 입금
▼	
⑦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시)
▼	
⑧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모니터링(중간점검) 실시
▼	
⑨ 수행완료 확인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확인 컨설팅 실시 후 15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확인 : 공단(심사위원회) - 지원계획과 수행내용 일치 여부, 수행 충실성, 지원성과 등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잔금) 지급
▼	
⑩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기관 ○ 분담금(잔금) 지급 요청 : 컨설팅기관 → 공단, 모기업 - 지급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	
⑪ 성과분석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과성 분석, 우수사례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절차별 세부내용은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추후 제공)"에 따라 수행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사업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①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수시등록 희망 기관 : 사업자 등록증,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컨설턴트 등록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② 매칭컨설팅 지원 신청	모기업, 컨설팅기관	1. 매칭컨설팅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2. 매칭컨설팅 지원 계획서 1부
▼		
③ 지원기업 선정 (협력업체 등)	공단(심사위원회)	지원계획 심사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확인 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④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요청시)	컨설팅기관, 모기업, 공단	1. 컨설팅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인지 2만원(협약금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 모기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공단, 모기업 착수금(선금) 입금확인서(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⑤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1. 컨설팅 착수확인서 2. 수행일지, 보고서 및 증빙자료(필요시 수행사진 등) 3. 컨설팅 지원계획 변경요청서(지원계획 변경 시)
▼		
⑥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컨설팅기관 : 실태 컨설팅 보고서 2. 공단(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		
⑦ 컨설팅 완료	컨설팅기관	수행완료 보고서 및 제출 공문, 완료 확인서, 수행일지, 정산자료 등
▼		
⑧ 수행완료 확인	공단(심사위원회,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수행완료 확인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확인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2. 만족도 조사서(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⑨ 공단, 모기업 분담금 지급 신청	컨설팅기관	정산금 지급 요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청구용),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